##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65 발의연월일: 2024. 12. 5.

발 의 자 : 윤호중 • 권칠승 • 위성락

문진석 • 정준호 • 정성호

이학영 · 박정현 · 김영환

김성환 · 임오경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엄은 국가긴급사태에 직면하여 정상적인 헌법보호수단으로 헌법을 수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강력하고 예외적인 헌법보장수단임. 동시에 입헌주의의 일시적정지로 말미암아 입헌주의 그 자체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한 침해 내지 제한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계엄의 남용 또는 악용의소지를 줄이기 위한 규범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현대 민주적 헌법국가의 통례임. 비교법적으로 프랑스·독일·미국·영국 등은 「계엄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계엄권을 남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위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통제 장치를 두고 있음.

반면, 우리 현행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

생 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계엄 선포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나 계임 해제의 권한은 국회에 있음을 천명하고 있는 것임. 또한 계임법 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하여 국회가 190명의 찬성으로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새벽 시간이라 국무위원 소집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킴에 따라 헌법이 정한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시(戰時)가 아닌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계엄 선포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11조제2항 후단 신설 등).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동의)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 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시인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하고,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 의를 개의하여야 한다.
- ③ 국회의장은 제1항에 따른 계엄 선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24시간이내에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제4조제2항 중 "집회(集會)를"을 "집회를"로, "한다"를 "하고, 국회의장 은 지체 없이 본회의를 개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즉시 계엄 해

제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u>	제2조의2(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동의)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
	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미리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
	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시인 경우에는 그러하
	<u>지 아니할 수 있다.</u>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
	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
	하여야 하고,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를 개의하여야 한
	<u>다.</u>
	③ 국회의장은 제1항에 따른
	계엄 선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
	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생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	②
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u>집회(集會)</u>를 요구 하여야 <u>한다</u>.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생 략)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 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 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생략)

			- <u>집회</u> 들	<u>=</u>		
		하고,	국회의	장은	- 지체	없
<u>0</u> ]	본호	희의를	개의하	<b>-</b> 여 o	ㅑ 한디	<u>.</u> .
भी 11:	조(겨	11임의	해제)	1	(현행	과
같	음)					
_						

\_\_\_\_\_

다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여, 그즉시 계엄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현행과 같음)